

KOLAS-R-002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8. “KOLAS 공인성적서”란 KOLAS 공인기관이 인정분야 및 범위 내에서 KOLAS 인정기준에 따라 발행하는 교정성적서, 시험성적서, 검사성적서, 메디컬시험 결과보고서, 숙련도시험 스킴 결과보고서, 표준물질 인증서, 생물자원 인증서 또는 제품인증서를 말한다.</p>	<p>8. ----- ----- ----- ----- -----, 타당성평가서 또는 검증서----- -----.</p>	<p>KOLAS 공인성적서에 타당성평가서 또는 검증서 추가</p>
<p>제12조(인정 분야 변경 등) ① KOLAS 공인기관이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인정 분야 또는 범위(측정범위, 표준, 시험 항목·물질, 제품, 소재지 등)를 확대하는 경우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정 분야 확대”로 신청해야 한다.</p> <p>② 인정 분야 및 범위 축소, 주요한 항목이나 기술적 내용이 추가되지 않은 규격 및 <u>인증기준</u> 최신화, 유사규격, <u>인증기준</u> 추가 또는 교정 측정불확도 변경시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정 분야 변경”으로 신청해야 하며, 소재지, 주요 설비의 변경 또는 이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그 밖의 변경”으로 신청해야 한다.</p>	<p>제12조(인정 분야 변경 등) ①----- -----(------ -, --, <u>검·인증스킴</u>, ----)- -----.</p> <p>② ----- ----- <u>검·인증기준</u> -----, <u>검·인증기준</u> ----- ----- -----.</p>	<p>인정분야 확대 범위 명확화</p> <p>인정분야 변경 신청의 요건 명확화</p>
<p>제19조(기술책임자) ① KOLAS 공인기관은 공인분야의 업무수행능력과 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KOLAS 공인기관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해당분야</p>	<p>제19조(기술책임자) ① ----- ----- -----</p>	<p>검증기관의 경우 기술책임자의 역할 명확화</p>

별로 기술책임자(숙련도시험운영기관의 경우에는 운영책임자, 제품인증기관의 경우에는 인증책임자에 해당하며, 이하 기술책임자의 의무와 동일하게 적용한다.)와 관련 부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기술책임자는 KOLAS 공인성적서와 관련 기록을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KOLAS 공인성적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인증서는 제외한다.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별표 1]
KOLAS 공인기관 인정분야 및 범위(제3조 관련)
< 신 설 >

-----, 검증기관
의 경우에는 검증결과에 대한 검토책임자

-----)
-----.

② -----

-----, 타당성평가서,
검증서- 해당되지 않는다.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별표 1]
KOLAS 공인기관 인정분야 및 범위(제3조 관련)

9. KOLAS 공인검증기관
KOLAS 공인검증기관의 인정분야는 대분류,
중분류로 구분하고 분류는 다음과 같이 정
한다. KOLAS 공인검증기관의 인정범위는
활동유형(타당성평가 및/또는 검증), 타당성
평가 및 검증스킵, 타당성평가 및 검증방법
(표준) 등을 포함한다.

<u>대분류</u>	<u>중분류</u>
1. <u>환경정보</u>	1.01 제품환경 발자국(Product environmental footprint)
	1.02 온실가스 배출량(Greenhouse gas emission)
	1.03 녹색 및 기후금융(Green debt instruments)
	1.04 탄소중립 (Carbon neutrality)
	1.05 환경자원 가치평가(Monetary val

검증분야 기술책임자의 공인성적서 서명의 의무 미적용

검증기관 분류 체계 추가

<u>대분류</u>	<u>중분류</u>
	uation of environmental impacts and related environmental aspects)
	1.06 환경성과(Environmental performance evaluation)
	1.07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to climate change)
	1.08 제품 환경성 선언 (Environmental declarations)
	1.09 환경 보고서
	1.10 기타
2. 산업/ 기술	2.01 건설 기술
	2.02 에너지 관리
	2.03 재무 관리
	2.04 산업 자동화 시스템
	2.05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엔지니어링
	2.06 인공지능
	2.07 정보 기술
	2.08 신기술 타당성 평가
	2.08 기타
3. 안전	3.01 기계 안전
	3.02 기업 재난 안전
	3.03 안전 및 설계 엔지니어링
	3.04 기타
4. 지속 가능	4.01 지속가능 보고서 및 ESG 검증 보고서
	4.02 사회적 책임
	4.03 기타
5. 정책	5.01 정책(예비타당성 조사/효과성 검증)
	5.02 연구사업(사업계획서 타당성평가/사업결과 검증)
	5.03 예산(연간사업계획 타당성평가/사업실적 검증)
	5.04 기타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별표 2]
KOLAS 공인기관 인정 및 평가기준(제4조 관련)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별표 2]
KOLAS 공인기관 인정 및 평가기준(제4조 관련)

검증기관 인정 및 평가기준 추가

< 신 설 >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별표 3]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서류(제8조 관련)
< 신 설 >

9. KOLAS 공인검증기관

- 가. ISO/IEC 17029(Conformity assessment -- General principles and requirements for validation and verification bodies)
- 나. 환경정보 분야의 경우, ISO 14065(General principles and requirements for bodies validating and verifying environmental information)
- 다. 해당되는 경우, 타당성평가 및 검증 스킴 소유주의 추가요구사항
- 라. 해당되는 경우, 분야별 추가기술요건
- 마.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별표 3]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서류(제8조 관련)

9. KOLAS 공인검증기관

- 가. 일반현황 및 인력현황(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의 대표자 서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제출)
- 나. 인정신청분야 및 범위(인정신청분야는 사업장별로 신청분야가 상이한 경우, 인정신청 분야별 사업장을 기재하여야 한다.)
- 다.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스킴 운영계획서 등 업무현황자료
- 라.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스킴 소유주가 있는 경우 관련 정보
- 마.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적(법 시행규칙

검증기관 인정신청 서류 추가

제6조제1항제4호의 적합성평가 업무 추진 체계의 국제기준 부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자체 심사·검토자료에 해당

바. 해당되는 경우, 인정과 관련된 컨설팅이나 기술지도를 받은 내용

사. 품질시스템 문서(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의 적합성평가 업무의 품질 유지를 위한 문서에 해당)

아. 입회 가능한 검증대상 기관 목록 및 일정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별표 5] 기술책임자의 자격기준(제19조 관련)

2. 학력 및 경력요건

바. KOLAS 공인제품인증기관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별표 6] 실무자의 자격기준(제21조 관련)

1. 학력 및 경력요건

< 신 설 >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별표 5] 기술책임자의 자격기준(제19조 관련)

2. 학력 및 경력요건

바. -----, KOLAS 공인검증기관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별표 6] 실무자의 자격기준(제21조 관련)

1. 학력 및 경력요건

아. KOLAS 공인검증기관

1) 실무자는 해당분야 업무에 적정한 실무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2) 실무자(타당성평가 및 검증심사원)로서 요구되는 최소 실무경력(년)은 다음과 같다.

최소 실무경력(년)		
전문학사	학사	석사 이상
3	2	1

3) 다른 법 또는 타당성평가 및 검증 스킴 규정에서 요원에 대한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요건을 추가로 만족하여야 한다.

검증분야 실무자의 요건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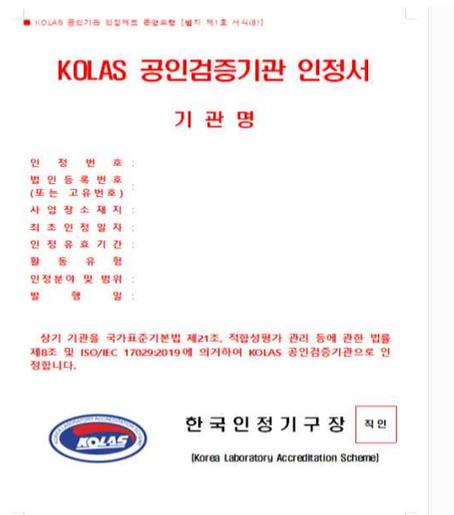
2. 실무자의 업무능력과 평가요건
< 신 설 >

[별지 제1호 서식]
< 신 설 >

2. 실무자의 업무능력과 평가요건
아. KOLAS 공인검증기관

- 1) 실무자(타당성평가 및 검증심사원)는
다음의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가)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기관의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기준에 대한 이해 능력
 - 나)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방법과 절차 및 품질시스템 이해 및 관리 능력
 - 다)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스킴의 형식 및 특성에 대한 이해 능력
 - 라)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심사, 타당성평가서 또는 검증서 작성 및 결과 해석에 대한 능력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8)



검증기관 실무자의 업무능력과 평가
요건 추가

검증기관 인정서 추가

검증기관 영문 인정서 추가

CERTIFICATE OF ACCREDITATION

Name of Validation/Verification Body

Accreditation No. :
Corporation Registration No. :
Address of Validation/Verification Body :
Date of Initial Accreditation :
Validity of Accreditation :
Type of Activity :
Scope of Accreditation : Attached Annex
Date of issue : month, day, year.

This Validation/Verification Body is accredited in accordance with the recognized International Standard ISO/IEC 17029:2019. This accreditation demonstrates competence of the body's quality management system and operations within the accreditation scope.



Head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